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8
------------	-----

발의연월일 : 2016. 6. 22.

발의자 :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박주선 · 박광온 · 이춘석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이용주 · 박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8호의2·8호의3 및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4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8조제2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3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별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9. (생 략)</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32조(별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8의2. 제24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p> <p><u>8의3. 제28조제2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u></p> <p>9. (현행과 같음)</p> <p>제34조(과태료) ①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u>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p> <p><u>7. 제2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